

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투자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관련 2445
----------	---------

제안년월일 : 2025년 4월 24일

제안자 : 기획경제위원장

1. 수정이유

- 투자진흥재단의 효율적인 운영과 임원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기관장의 명칭을 이사장으로 변경하면서 이사회의 의장을 겸하도록 하고, 임원의 최초 임기와 연임 단위를 각각 2년으로 함.
- 동 조례안 중 근거가 불분명한 ‘규칙’에 관한 조항을 삭제·수정하고 예산 및 결산서류 등의 범위와 절차를 명문화함.

2. 수정의 주요 내용

- 기관장의 명칭과 기능을 정비하고, 임원의 최초 임기와 연임 단위는 각각 2년으로 함(안 제7조, 안 제9조, 안 제10조).
- 이사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정관에서 정하는 당연직 이사 기재순으로 직무대행자를 정함(안 제8조제2항)
- 출연금의 교부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(안 제12조제3항).

-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의 작성과 승인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함(안 제15조).
- 결산서류의 제출 기간과 범위를 정하고 제출 기관에 대해 규정함(안 제16조).
- 경영평가를 실시할 경우 그 평가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(안 제19조제3항).

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투자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투자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7조제1항 중 ‘이사장 및 대표이사를’ 을 ‘이사장을’ 로 한다.

안 제7조제2항 중 ‘대표이사, 이사장을’ 을 ‘이사장을’ 로 한다.

안 제7조제3항 중 ‘3년’ 을 ‘2년’ 으로, ‘1년’ 을 ‘2년’ 으로, ‘대표이사’ 를 ‘이사장’ 으로 한다.

안 제7조제4항 중 ‘대표이사를’ 을 ‘이사장을’ 로 한다.

안 제8조제2항 중 ‘대표이사가’ 를 ‘정관에서 정한 당연직 이사 기재순으로’ 로 한다.

안 제9조(대표이사와 감사)를 제9조(이사장과 감사)로 조제목을 변경하고,
제9조제1항 중 ‘대표이사는’ 을 ‘이사장은’ 으로 한다.

안 제10조 중 ‘대표이사가’ 를 ‘이사장이’ 로 한다.

안 제12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③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 교부는 연도별 사업계획서에 대한 시장 승인 후 재단에 교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신속한 출연금 교부가 필요하거나, 시의 정책 변경으로 교부 시기가 달라지는 경우 시와 재단이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.

안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①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.
- ② 사업계획서에는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성과관리계획을 포함하여 제출하고, 성과관리계획에는 성과목표 측정을 위한 성과지표 및 검증방법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.
- ③ 시장은 사업계획서 승인 시, 중장기적 관점에서 시 재정에 미치는 영향, 재단의 자체적인 재원확보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, 필요시 재단에 사업 계획 등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.

안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6조(결산서 등의 제출) ①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결산서류를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- 1. 세입·세출에 관한 예산·결산보고서 및 발생주의·복식부기에 따른 재무회계
결산서

2.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제1호의 예산·결산보고에 대한 검토의견 및 재무회계
결산에 대한 감사보고서

② 재단은 「서울특별시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22조의2에 따라
예산서 및 결산서를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
제출하여야 한다.

안 제19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경영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관련기관·단체 또는 관계
전문가에게 그 평가를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.

수정안 조문 대비표

조 례 안	수 정 안
제7조(임원) ① 재단에는 <u>이사장 및 대표이사</u> 를 포함한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이사와 2명 이내의 감사를 둔다. 다만 이사회 구성 중 어느 한쪽의 성별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 ② <u>대표이사, 이사장</u> 을 포함한 선임직 이사 및 감사는 시장이 임명한다. ③ 임원의 임기는 <u>3년</u> 으로 하고, <u>1년</u> 단위로 연임될 수 있으며, 그 밖에 <u>대표이사·이사</u> 및 감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 ④ <u>대표이사</u> 를 제외한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.	제7조(임원) ① ----- <u>이사장</u> 을 ----- ----- ----- ----- ② <u>이사장</u> 을 ----- ----- ③ ----- <u>2년</u> -----, <u>2년</u> ----- -----, ----- <u>이사장·</u> ----- ----- ④ <u>이사장</u> 을 ----- -----
제8조(이사회) ① (생략) ②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 업무 총괄하며,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<u>대표이사</u> 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. ③ (생략)	제8조(이사회) ① (생략) ② ----- ----- ----- <u>정관에서</u> <u>정한 당연직 이사 기재순으로</u> ----- ③ (생략)
제9조(대표이사과 감사) ① <u>대표이사</u> 는 재단을 대표하며, 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. ② (생략)	제9조(이사장과 감사) ① <u>이사장</u> 은 ----- ----- ② (생략)
제10조(직원) 재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<u>대표이사</u> 가 임명한다.	제10조(직원) ----- ----- <u>이사장</u> 이 -----
제12조(출연금 및 기금) ① ~ ② (생략) ③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 교부·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	제12조(출연금 및 기금) ① ~ ② (생략) ③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 교부는 연도별 사업계획서에 대한 시장 승인 후 재단에 교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신속한 출연금 교부가 필요하거나, 시의 정책 변경으로 교부 시기가 달라지는 경우 시와 재단이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.
제15조(사업계획서 등의 제출) 재단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. ② <신설>	제15조(사업계획서 등의 제출) ①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. ② 사업계획서에는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성과관리 계획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고, 성과관리계획에는 성과목표 측정을 위한 성과지표 및 검증방법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.

조 례 안	수 정 안
③ <신 설> 제16조(결산서의 제출) 재단은 매사업연도의 세입·세출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공인 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다음연도 2월 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② <신 설> 제19조(경영평가) ① ~ ② (생 략) <u>③ 제1항에 따른 경영평가의 수행방식 및 그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</u>	③ 시장은 사업계획서 승인 시, 중장기적 관점에서 시 재정에 미치는 영향, 재단의 자체적인 재원확보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, 필요시 재단에 사업계획 등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. 제16조(결산서 등의 제출) ①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결산서류를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1. 세입·세출에 관한 예산·결산보고서 및 발생주의·복식부기에 따른 재무회계 결산서 2.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제1호의 예산·결산보고에 대한 검토의견 및 재무회계 결산에 대한 감사 보고서 ② 재단은 「서울특별시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22조의2에 따라 예산서 및 결산서를 서울 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 제19조(경영평가) ① ~ ② (생 략) <u>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경영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관련기관·단체 또는 관계전문가에게 그 평가를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.</u>

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투자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설립되는 재단법인 서울투자진흥재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, 세계 투자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외국인투자 유치를 통한 서울특별시의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외국인투자”란 서울특별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가 관할하는 지역 내에서 「외국인투자 촉진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.
2. “외국인투자기업”이란 법 제2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외국투자가가 출자한 기업으로서 시가 관할하는 지역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을 말한다.

제3조(적용범위)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투자진흥재단(이하 “재단”이라 한다)의 설립·운영에 관하여는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, 「민법」 등 재단법인의 설립·운영 등에 관한 관계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4조(설립) 재단은 「민법」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.

제5조(재단의 사업) 재단은 세계 투자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외국인투자 유치를 통한 시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1.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한 실태조사 및 전략 수립
2. 외국인투자·정주 환경 등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
3.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한 국내외 교류 지원
4. 공간, 자금, 투자, 인재 등 외국인투자 유치 활성화에 필요한 지원
5. 제1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이 위탁하는 외국인 투자 유치 지원 사업
6. 그 밖에 정부, 시 자치구 또는 관련 기관·협회 등에서 위탁하는 외국인투자 유치 사업

제6조(정관)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.

1. 목적
2. 명칭
3. 사무소의 소재지
4. 자산 및 회계에 관한 규정
5. 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
6. 이사회에 관한 사항
7. 감사 및 직원에 관한 사항

8. 기금에 관한 사항

9. 공고에 관한 사항

10. 사업에 관한 사항

11.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

12.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

② 재단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 이 경우 사전에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제7조(임원) ① 재단에는 이사장을 포함한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이사와 2명 이내의 감사를 둔다. 다만 이사회 구성 중 어느 한쪽의 성별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이사장을 포함한 선임직 이사 및 감사는 시장이 임명한다.

③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, 2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으며, 그 밖에 이사장·이사 및 감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④ 이사장을 제외한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.

제8조(이사회) ① 재단의 사업수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.

②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 업무 총괄하며,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

정관에서 정한 당연직 이사 기재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③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9조(이사장과 감사) 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며, 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.

② 감사는 재단의 회계 및 사무를 감사하고,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.

제10조(직원) 재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사장이 임면한다.

제11조(기본재산의 조성) 재단의 기본재산은 시의 출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.

제12조(출연금 및 기금) ① 시는 재단의 설립·시설·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금을 교부하거나 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.

② 재단의 설립·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재단에 기금을 둘 수 있다.

③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 교부는 연도별 사업계획서에 대한 시장 승인 후 재단에 교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신속한 출연금 교부가 필요하거나, 시의 정책 변경으로 교부 시기가 달라지는 경우 시와 재단이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.

제13조(운영재원 등) 재단의 시설·운영·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시의 출연금, 기금운용과 관련한 이자수익금, 수탁사업수입금, 재단사업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.

제14조(사업연도) 재단의 사업연도는 시의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.

제15조(사업계획서 등의 제출) ①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.

② 사업계획서에는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성과관리계획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고, 성과관리계획에는 성과목표 측정을 위한 성과지표 및 검증 방법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.

③ 시장은 사업계획서 승인 시, 중장기적 관점에서 시 재정에 미치는 영향, 재단의 자체적인 재원확보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, 필요시 재단에 사업계획 등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.

제16조(결산서 등의 제출) ①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결산서류를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1. 세입·세출에 관한 예산·결산보고서 및 발생주의·복식부기에 따른 재무회계 결산서
2.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제1호의 예산·결산보고에 대한 검토의견 및 재무회계 결산에 대한 감사보고서

② 재단은 「서울특별시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22조의2에 따라 예산서 및 결산서를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제17조(업무의 위탁) ① 시장은 외국인투자 유치에 대한 지원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재단에 해외 투자유치 지원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업무 위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 협약에 따른다.

제18조(보고 및 검사)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재단의 경영상황 및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업무를 확인·검사하게 할 수 있다.

제19조(경영평가)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단에 대한 경영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경영평가결과에 따라 재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.

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경영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관련기관·단체 또는 관계전문가에게 그 평가를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.

제20조(공무원의 파견) 시장은 재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「지방
공무원법」 제30조의4에 따라 재단에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